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2. 6. 14.)에 따라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제3호)
- 조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관련 조문 현행화 (안 제18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2015년 기준 삭제 (안 별표2)
- 기타 명칭 및 표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2. 6. 14.)에 따라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22. 6. 14.)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관련 신고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서식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였으며,
- 안 별표2에서는 2015년 3월 19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 시 규정하였던 2015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적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15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수수료를 삭제하였음.

○ 본 조례안은

-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22. 6. 14.)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2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개정(시행 '22.6.14.)에 따라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조문을 현행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제3호)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관련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2015년 기준 삭제(안 별표2)
- 라. 기타 명칭 및 표현 정비(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구민**”을 “**주민**”으로, “**구 홈페이지**”를 “**영등포구 홈페이지**”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
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
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
식**”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시행규칙 제
16조의7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
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
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2017년 5월 1일부터			
부피형 종량제	1 ℓ	100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 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가격)에 포함
	2 ℓ	190원			
	3 ℓ	300원			
	5 ℓ	500원			
	10 ℓ	1,000원			
	20 ℓ	2,000원			
	100 ℓ	10,0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130원			※ 감장철 등 음식물 류폐기물 다량배출 시 가치는 20ℓ, 100ℓ의부 피형 종량제 봉투 사 용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90원			
	ℓ 당	140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u>구 홈페이지</u> 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고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주</u> <u>민</u> ----- <u>영등포</u> <u>구 홈페이지</u> ----- -----

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3. (생략)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7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4. -----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
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
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
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
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해 1
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
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
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 별지 제48
호의4서식-----

-----.

5. -----

----- 별지
제4호의10서식-----
-- 별지 제4호의11서식-----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고
		2015년	2017년 5월 1일부터			
부피형 종량제	1ℓ	70원	100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형 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관내수수료: 수수료(가격)에 포함
	2ℓ	140원	190원			
	3ℓ	210원	300원			
	5ℓ	350원	500원			
	10ℓ	700원	1,000원			
	20ℓ	1,400원	2,000원			
	100ℓ	7,000원	10,0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100원	130원			※ 감량철 등 음식 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20ℓ, 100ℓ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30원	190원			
	ℓ당	100원	140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비고: "2015년" 기준 수수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고	
		2017년 5월 1일부터				
부피형 종량제	1ℓ	100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형 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관내수수료: 수수료(가격)에 포함	
	2ℓ	190원				
	3ℓ	300원				
	5ℓ	500원				
	10ℓ	1,000원				
	20ℓ	2,000원				
	100ℓ	10,0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130원			※ 감량철 등 음식 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20ℓ, 100ℓ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 장 제외)	kg당	190원				
	ℓ당	140원				
다량배출사업 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